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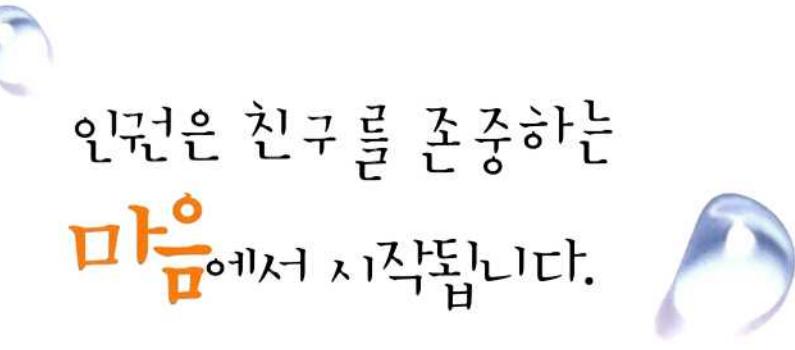
| 청 | 소 | 년 | 인 | 권 | 이 | 야 | 기 |

#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청소년위원회의 한마디 | 인권은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박지성 인터뷰 | 당당하게 선택한 삶이 행복합니다. 나의 인권지수는 몇 점? ·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고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권리를 가집니다. 학교 및 교과를 선택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없이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정 보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문화를 누리고 살 권리가 가집니다.





# 인권은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한 어른이 되는 길목에 있습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자신을 갈고 닦으며 당당하고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론 답답하고 때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억압과 차별,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 등 사회 곳곳에 암초처럼 땅에 뿌리를 틀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현실들. 그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 또한 소중한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인권의식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라 일컬어지는 장애우,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자녀나 탈북 청소년 등의 인권 또한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배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인권은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그것은 너와 나의 인권이 지켜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 contents

## 청소년 인권 이야기



청소년위원회의 한마디 | 인권은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박지성 인터뷰 |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나의 인권지수는 몇 점?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고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집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권리를 가집니다

학교 및 교과를 선택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없이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문화를 누리고 쉴 권리를 가집니다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청소년위원회 홍보대사 박지성입니다.

저는 사실 인권이라고 하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라는 정도밖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권보다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축구공과 함께 살았지요. 놀 때도 항상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어요. 하지만 전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경기에 나갈 때면 늘 키가 큰 다른 아이들에게 밀려 벤치에 앉아 있곤 했지요. 키가 좀 쑥쑥 자라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키는 작지만 대신 기술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TV에서든 경기에서든 기본기 한 가지를 보면 그걸 익히려고 수없이 연습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꼭 익힌다' 하고 나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 기술이 몸에 붙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발등으로 볼 튕기기'를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3천 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한 밀 거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면 '아, 저럴 때는 저렇게 차면 안되는데'. '어, 저쪽 수비가 뚫렸다' 하고 운동장에서의 선수와 공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요. 나중엔 사람이 많은 시내 한복판이나 시장, 지하철역 같은 데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게 경기의 흐름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좋아서 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 역시 가만히 앉아서 남이 나에게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고 요구할 때, 그리고 나의 권리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때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세계의 주역입니다  
청소년 위원회 홍보대사  
박지성

76



# 나의 인권지수는 몇점?

그림 속에서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골라 보세요.



★ 몇 개나 찾았나요?

1~2개 인권침해이고, 당신은 심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세요.

3~5개 낮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신의 인권의식을 기르도록 하세요.

6~8개 소극적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권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입니다. 좀 더 철저한 인권의식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9~12개 상당히 예민한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권의 대기가 되겠습니다.

13개 이상 인권운동가 수준입니다. 당신은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군요.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2개 인권침해이고, 당신은 심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세요.

3~5개 낮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신의 인권의식을 기르도록 하세요.

6~8개 소극적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권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입니다. 좀 더 철저한 인권의식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9~12개 상당히 예민한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권의 대기가 되겠습니다.

13개 이상 인권운동가 수준입니다. 당신은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군요.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진이는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합니다.

반 아이들 모두가 지날 때마다 툭툭 치고 갑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학교, 이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호는 학교 앞 골목에서 수시로 돈을 뜯깁니다.

주지 않으면 흠씬 얻어맞으니 안 줄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형근이는 선배로부터 일진회에 들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거부하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폭력을 당해야 합니까!

현이는 아버지가 맙습니다.

술에 취하시면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마구 때리시기 때문입니다.

동수는 오늘도 학교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까짓, 아래도 맞고 절래도 맞을 거

마음대로 하고 몇 대 맞고 말기로 했습니다.

호영이는 길 가다 모르는 형들에게

재수 없게 생겼다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폭력을 당해야 합니까!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당당한 개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 주세요!

인권은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 친구와 함께하기 5계명

1.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처럼 친구를 항상 존중한다.
2. 나의 행동이 친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한다.
3. 나의 행동이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4.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생각한다.
5. 내가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한다.



왕따



폭행, 금품갈취, 일진회 등



가정내 폭력



학교에서 체벌



사회에서의 폭력

이런 말이 정말 싫어요 ㅜㅜ

“니네 엄마는 뭐하냐? 니네 엄마 집 나갔냐?”

“저런 놈 위해 제 엄마가 도시락 싸주겠지.”

“가정교육을 그 따위로 받았어!”

“니네 아버지 뭐 해?”

“이 꼴통아, 그것도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청소년 전화 1388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연결됩니다.

- 고민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 폭력, 가출, 학대 등 위험에 처했을 때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발견했을 때

### 관련 법 규

청소년기본법 제5조 :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안전하고 평화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가진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19조 :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 하든 못 하든

가정환경이 좋든 나쁘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차별받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용서되고 공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때  
머리는 장식이나며 아이들 앞에서 놀랄 때  
공부 못한다고 부모님까지 들먹일 때



예쁜 아이에겐 관대하고 나한테만 유독 엄할 때  
생긴 것으로 농담하며 놀랄 때  
친구들이 다른 아이와 다르게 대할 때

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아 취급할 때  
사소한 실수도 색안경 끼고 볼 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학교 다니는 친구의 부모가 날 꺼려할 때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 당할 때



부모는 가출하고  
할머니하고만 사니  
애가 공부도 안하고  
예의도 없고 말썽만 부리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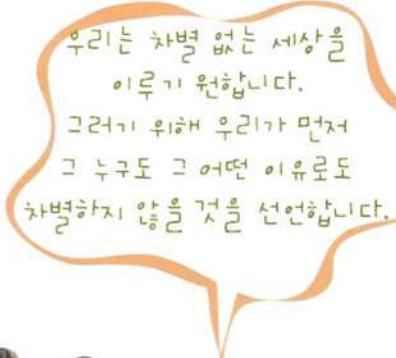
모든 혜택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현실을 볼 때  
지방은 낙후되어 있는 곳이라는 선입관을 만들 때  
수도권에 비해 실력이 뒤진다는 편견을 만들 때



외모가 다르다고 놀랄 때  
사투리를 따라하며 놀랄 때  
외모나 말투가 다르다고 왕따시킬 때



니이를 들먹이며 육박자를 때  
어린 놈이 공부나 하라고 할 때  
선배라고 위세 부릴 때



잠깐!!

혹시 내가 당하는 차별은 부당하게 여기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인권의식을 키워 가야 하겠습니다.

#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고 소신에 따른 의견을 개진할 권리

## 의견을 가진합니다

우리는 대량생산되는 인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모습이고 싶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머리 길면 걸멋 들어서 안돼!”

“다른 애들 다 잘 하고 있는데 너 혼자 뛰어서 위화감 조성하지 마!”

“너희들은 너무 성숙해서 머리 길면 성인 같아. 탈선을 해도 단속이 안돼!”

귀걸이 3센티 엄격하게 자르기, 바리깡으로 밀어서 고속도로 내기.

반삭하면 반항한다고 더 심하게 혼내기, 곱슬머리 보고 파마했다고

머리 평고 오라 하고, 심하게는 라이터로 태우기까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외쳐요, 우리의 소망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두발 제한 폐지!

개성 표현의 자유를 주세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생명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권에 해당합니다. 물론 군대나 교도소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신체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요최소한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률적 전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두발 제한은 불가피하지도 필요최소한도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 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두발규제에 대한 입장

각 교육청, 두발지도 지침 제·개정 요구하는 공문 발송 ('05. 5. 10)

“단위 학교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 자유화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지도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학생들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지도 방법은 지양”

국가인권위원회, “중고생 두발규제는 기본권 침해” 결정 권고('05. 7. 4)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단속 때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두발 관련 교칙 제·개정 때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당 학교에 권고,

“민주주의 배움터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책상과 의자 를 저버리면 안되겠지요!

책상과 권리,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답니다.

진정한 학생회,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이듯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학생회가 정말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나요? 학생회의 안건은 교직원들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려면 선생님들 눈에 날 각오를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는 진정한 학생회를 갖고 싶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어야 한다.



진정한 학생회 활동 보장되어야

이름만 자유가 아닌 진짜 자유게시판을 가질 수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엔 자유게시판이 있지만 게시글은 실명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학교의 입장과 다를 때는 바로 제재가 뒤따릅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이름이 학교로 넘어가 야단을 맞은 사례도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게시판을 보장해 주세요.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을 통해 여러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실명 게재 ‘학교 게시판’은 조용

자유롭게 모여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자유롭게 모여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집회에 대해 어른들은 불법 행위라며 처벌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자유로이 모여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15조(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억지로 강요하는 특정 종교교육,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종교자유국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건립이념으로 삼는 학교에 배정되어 원치 않는 종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원칙적으로는 종교 과목 외에 선택과목을 설치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신념에 반하는 종교 교육,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 권리를 가집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상업문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스팸 메일과 동영상, 술 담배 파는 환경은 제발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 주세요.

## 청소년이 희망★이잖아요?!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몇 년도 쌀인지...  
찰기라곤 없는...

청소년이  
희망★이잖아요?!

— 맛있고 질 좋은 급식

학교 및 교과를 선택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부의 교육차별금지 관련 지침(2004. 3)

- 0교시, 보충수업 등을 선택, 거부할 수 있다.
- 우열반 편성을 금지한다.
- 9시 이후엔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다.
- 10시 이후에는 학원수업을 금지한다.

아침밥도 못 먹고  
젖은 머리 휘날리며  
달려가야 하는 0교시 수업.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골치 아픈 수업 내용을  
머리 속에 꾹꾹 눌러 담는  
것으로도 모자라

부실한 저녁밥을 먹고  
밤 10시까지 꼼짝없이 해야 하는  
야간자율학습

아무리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지만  
우리의 미래가 공부에 달려 있다지만

우리의 적성에 맞는 학습,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 우리는 저마다 다른 능력,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지요. 물론 공부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모두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기와 적성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각기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 오전 8시 이전의 0교시 수업과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 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제2외국어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실업계로 진학하고 싶어요."  
"안 돼. 인문계로 가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진로를 강요하지 마세요. 청소년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 자신의 미래를 가꿔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우리,  
학교생활규정 제정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학교생활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징계 받는다!"  
"학교생활규정에 우린 동의한 적도 없는데..."

학교생활규정은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서의 학교 안에서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공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는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여 일방적으로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는 학교생활규정을 통고받고, 억지로 그 규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일망정 그 규정에 동의하느냐는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지요. 학교생활규정 제정에 학생들이 주체로서 참여하여 의견을 밝히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때 우리 청소년은 타율에 걸들여진 무기력한 개인이 아닌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운영회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청소년 인권 존중한 고등학교 교칙 개정

지난 2002년, 고등학교는 학생회칙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다는 판단 아래 학생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사들이 학생회 활동에 무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문과 조언에 머무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했으며, 학생회의 목적을 "학생들의 자율적 자치 능력을 배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것"(1조)이라고 못박아, 학생회 활동을 단순한 특별활동이 아닌 학생들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자치활동'임을 명확히 했지요. 또한 학생회 예산 편성권(31조)과 학칙 개정권(35조)도 학생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학생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한 선진적인 사례였습니다.



# 노동인권은

##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소자는 하루 7시간, 주 4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일부 업체(대기업과 은행, 금융)에서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 연소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성인과 동일한 3,100원)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약속한 근로시간 초과 (11.5%)



휴일 없이 근로 (9.3%)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음 (9.1%)

## 우리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세요

욕설·폭행·인격모독 (6.4%)



퇴직후 임금 못 받음 (6.3%)



최저임금 미만 수령 (5.1%)



## 상처의 경험으로 얼룩지는 실업계 고등학생 현장실습,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기술을 배우기 위한 현장실습이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상처의 기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력파견업체에 파견되어 간접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어디에 소속되어 일하는지도 모른 채 휴게 시간도 없는 장시간 노동, 위험하고 혐의없는 근로환경에서 어른들과 똑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지만, 받는 것은 최저임금의 90%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습업체를 그만두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청소년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 click Internet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노동부 전자민원실, 청소년문화센터(ycc.ne.kr),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job1318,ymca.or.kr), 청소년 아르바이트 (youthalba.or.kr), 전북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jbyouth.or.kr), 한동청소년문화공동체(youthfriend.or.kr) 등

## call center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청소년 전화 1388(청소년위원회)

피해신고 1350(노동부)



급여날짜를 안 지킴 (7.05%)

휴식시간 없음 (6.8%)

무단해고 (6.5%)

## 청소년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청소년들은 그냥 참고 지내거나(16.6%) 일을 그만두는(10.2%)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어른과 똑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하여 보장받아야 합니다.



# 차별 없이 복지 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가정이나  
시설이나 소년원에 살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우리의  
친구이고 모두 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고, 장차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움 받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는 없는 노릇,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혜 사실을 발표하거나 드러내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국가나 기관의 지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주세요.

## 장애로 차별받으면 안됩니다

장애는 자신이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장애'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장애 청소년도 일반 청소년과 함께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장애 청소년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보호·통제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수학여행 등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어서도 안됩니다.

## 가정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도 당당한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나 이민 등 가정생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결정됨으로써 청소년은 심리적인 불안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의도치 않은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당당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탈북 청소년이나 외국인노동자 자녀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탈북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 모두 똑같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사회적·교육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 통합되기 위하여 문화적응교육이나 언어교육 등 필요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아동시설, 위탁가정 또는 공동시설 청소년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된 청소년, 또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모두 차별 없이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만으로도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 격리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 미숙으로 비행을 저질러 교정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낫을 때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식사를 제공받을 건강권 등 소년원 수용 청소년들의 인권 또한 바르게 보장될 때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 정보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람이의  
하루

우리의 정보가 날에게 노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슈웅-

앗! 주소도  
확인 안 했는데...



وا장차



인터넷 마녀사냥, 우리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 갑속히 늘어나면서 인터넷에 의해 정보인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엔 빌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는데, 이제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지는 현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격한 감정을 담은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고,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까지 공개하여 피해 당사자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정보인권과 사생활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그것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또한 나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자기 문화를 누리고 쉴 권리 를 가집니다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

나와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단지 차이일 뿐입니다. 너와 나, 다른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이룹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나고 자라온 사람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누리고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개성이 다릅니다.  
저마다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우리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공부 잘 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기계 잘 만지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능력과 재주는 달라도 모두가 소중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개방시간이  
청소년들에게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쉬어야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공부도 가끔은  
쉬어가면서 할게요.

청소년은 문화와 예술을 누리고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기 위해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시설이 충분히 설치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31조 "모든 아동·청소년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우리에게도 쉴 권리를 주세요

우리에게는 공부하고 알 권리도 있지만 쉴 권리,

놀 권리, 즐길 권리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공부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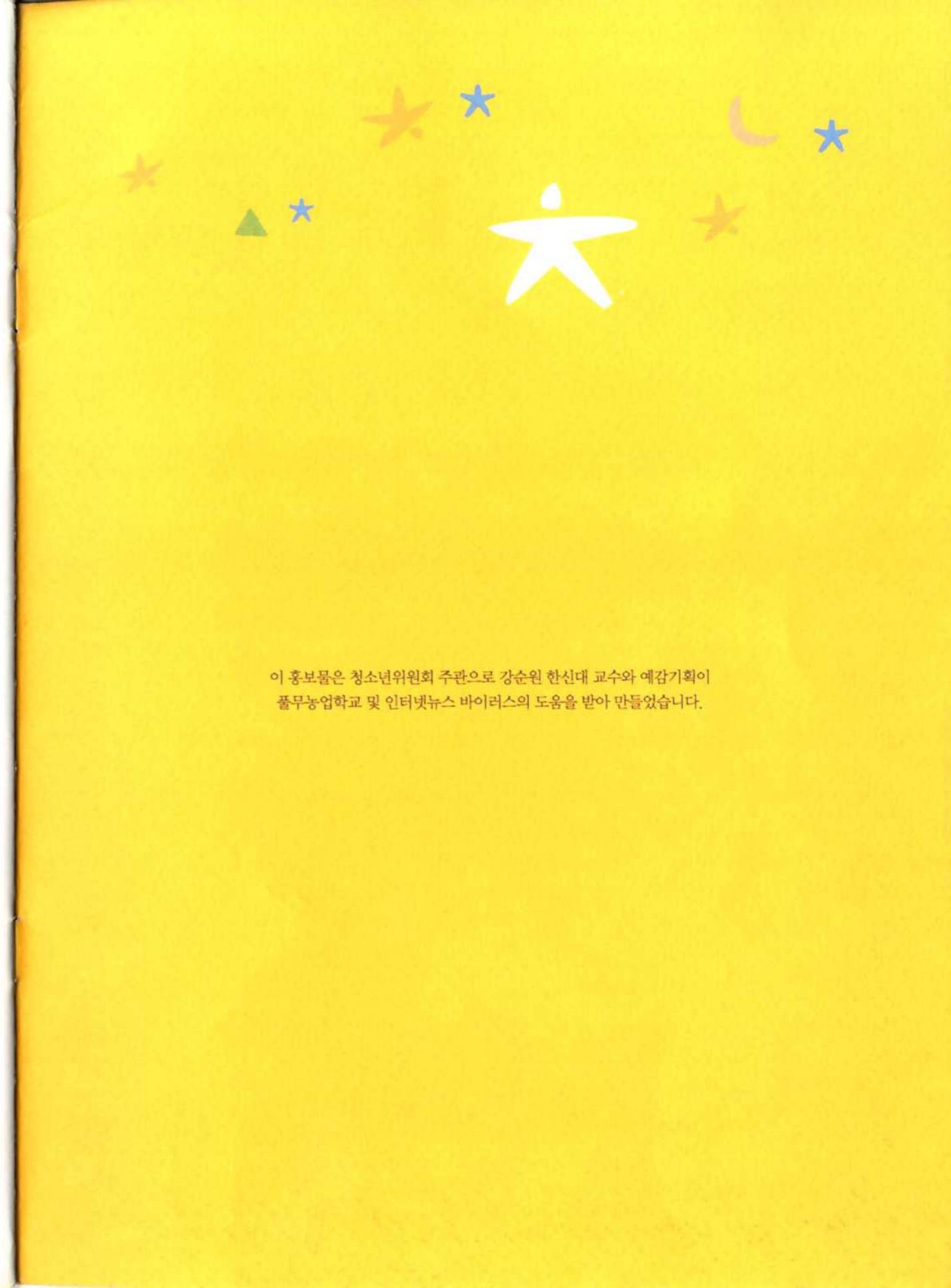
우리에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즐기고

쉴 권리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 홍보물은 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강순원 한신대 교수와 예감기획이  
풀무농업학교 및 인터넷뉴스 바이러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